

2024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행정조직 포함) 등〉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목 차

I. 자살예방교육 개요	3
II. 자살예방교육 안내	
1. 법적근거 및 교육대상	6
2. 교육내용 및 횟수	7
3. 교육방법	7
4. 결과보고	9
III. 부록	
<붙임1> 자살예방교육 수행기관	14
<붙임2> 전체 활용가능한 프로그램	15
<참고1> 국가기관 등 결과보고 취합범위	18
<참고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32

자살예방교육 개요

자살예방교육 개요

□ 교육목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위험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교육

자살예방법 제17조

- ▶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10조]

- 의무대상: 국가 및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보건복지종사자

구분	대상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 중, 고등학교)
국가 및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보건복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노력대상: 대학교, 대안학교, 민간사업장 종사자

구분	대상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학교)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
민간사업장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교육내용 및 실시횟수 [시행령 제10조의2]

-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연 1회 이상 실시

□ 교육방법 [시행령 제10조의2]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

□ 교육 결과보고 [시행령 제10조의2]

- 교육실시 기관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결과제출을 생략 가능)

자살예방교육 안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행정조직 포함) 등 대상 자살예방교육 안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1 법적근거 및 교육대상

-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방, 경찰, 소방으로 직군(직급)과 상관 없이 모든 공무원 및 모든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

▶ 국가기관 : 입법, 사법, 중앙행정조직

- ① 입법조직 :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 ② 사법조직 :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법원, 각급 법원 및 지방법원 및 지원
- ③ 중앙행정조직 :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 19부 3처 18청 및 그 소속기관(참고1)

▶ 지방자치단체 : 자치행정조직, 교육행정조직

- ① 지방자치단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기준으로 광역 시·도, 시·군·구
- ② 교육행정조직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기준에 따른 시·도 교육청 (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지원청

▶ 국군, 경찰 및 소방

- ① 국군 : 「국군조직법」 제14조에 따른 각군본부, 및 제15조에 따른 각군부대와 기관
※ 병사를 제외한 간부급(장교, 부사관, 군무원) 의무교육 대상
- ② 경찰·소방 : 경찰청·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른 각 기관

2 교육내용 및 횟수

-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중 연 1회 이상 실시

※ 의무교육 대상은 '25년 교육 결과 제출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전체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목록 (붙임2)

3 교육방법

1. 전문 또는 기관 강사교육 (붙임1)

외부 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전문강사 확인방법

자살예방교육 의무
홈페이지 접속
(<http://esu.kfsp.or.kr>)



자살예방교육
안내로 이동



상단 강사찾기
(지역별, 교육권한별)

- 전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에서 개발한 교육자료로 등록교육*을 보유한 기관에서 양성된 기관강사 (개발기관 직접 문의 후 강의 요청 필요)

* 등록교육 : 복지부 (예비·본)인증을 취득한 교육 또는 재단의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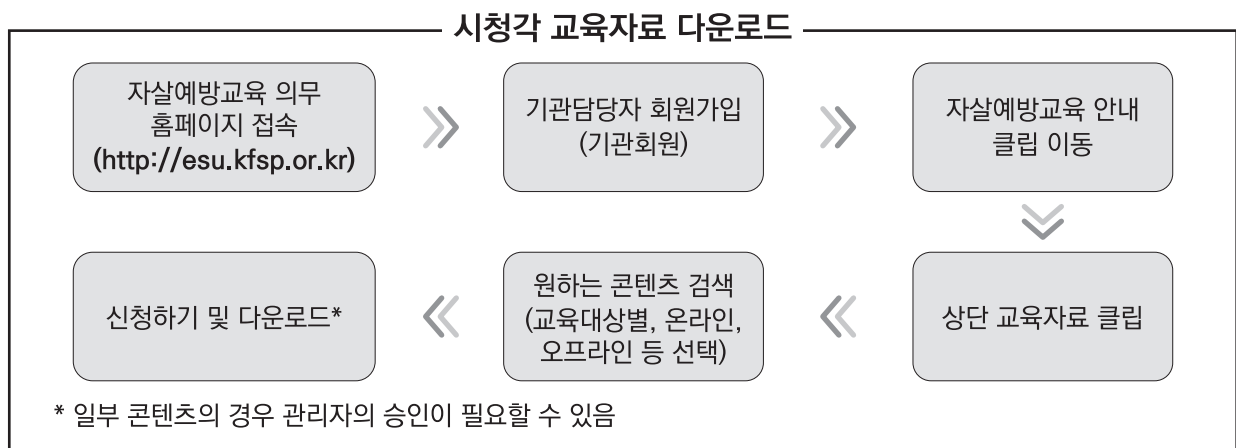
2. 자체교육

기관 내 내부직원이 시청각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진행하거나, 사내강사양성과정 수료 후 직접 대면교육 실시

※ 자체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만 가능 (생명지킴이 대면교육은 외부강사 섭외 통해 진행)

(1) 시청각 교육

- 기관 내 교육 담당자가 복지부(재단) 교육자료(교육영상·지도서)를 활용하여 교육 진행



- 교육 담당자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되는 지도서를 활용하여 시청각 교육 진행(단순 영상 시청이 아닌 교육생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 유도)

(2) 사내강사 대면교육

- 기관장 또는 내부직원이 재단의 사내강사양성과정을 수료 후 대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2024년 사내강사 양성과정(안)>

- (교육일정) 9월~11월 (총 2차 예정)
- (활동범위) 재직 중인 기관 및 단체에 한해 인식개선교육만 강의 가능
- (강사양성과정) 사전 온라인 이론교육(1시간)+대면 실습교육(5시간)
- (자격유지) 수료 후 자격 재직기간까지 (단, 매해 보수교육 수료 필요)

3. 온라인 교육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교육으로 교육생 수강 관리가 가능한 교육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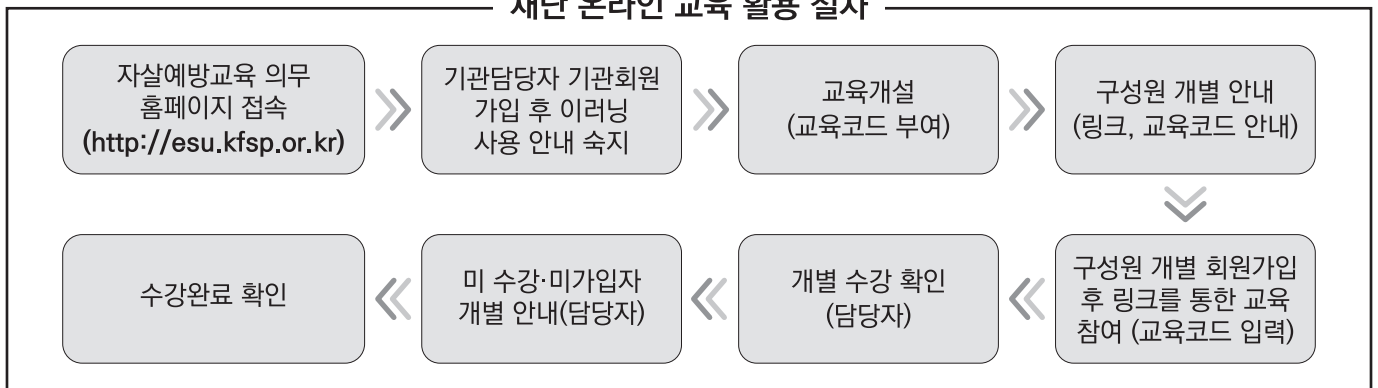
(1) 국가 공공교육 시스템 활용 (나라배움터 등)

- (교육대상)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및 소속 직원
- (교육절차)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각 기관별 온라인 교육 시스템 접속 후 지정과목 수강

(2) 재단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활용

- (교육대상) 나라배움터 이용이 불가능한 기관 또는 소속직원
- (신청절차) 재단 담당팀(교육관리팀)과 사전 협의 후 사업장 전용 온라인 교육 페이지 개설

재단 온라인 교육 활용 절차



4 결과보고

- (제출방법) 각 조직의 본부, 중앙기관은 소속기관의 교육실시 결과를 취합 후 일괄 시스템 입력 ☞ <https://edu.kfsp.or.kr>
- (제출기한) 각 조직의 본부, 중앙기관은 취합한 교육실시 결과를 2026년 1월까지 자살예방교육시스템 내 결과보고 입력
- (보고내용) '25년에 실시한 교육 결과보고 *교육 대상인원, 교육 이수인원

<세부 결과보고 안내>

1. 입법조직

- (보고대상)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
- (보고방식)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교육실시 결과를 일괄 취합보고

▶ 입법지원조직(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각 기관별 개별 보고

2. 사법조직 *취합범위 참고1

- (보고대상)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법원, 각급 법원 및 지방법원 및 지원
- (보고방식) 대법원, 각급법원은 지방법원 및 지원의 교육실시 결과를 일괄 취합보고

▶ 「헌법재판소법」 및 동 법 제19조의4에 따라 설립된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 「법원조직법」 및 동 법 제7편에 따라 설립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각 기관별 개별보고

3. 중앙행정조직 (부·처·청) *취합범위 참고1

- (보고대상)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보고방식) 19부 3처 18청은 소속기관 교육실시 결과를 일괄취합 보고

▶ 20개 청 중 2개청(경찰청 및 소방청) 제외
▶ 소속기관 :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 각 기관별 개별보고

4. 국군 (육·해·공군)

- (보고대상) 「국군조직법」 제14조에 따른 각군본부, 및 제15조에 따른 각군부대와 기관
- (보고방식) 각군본부는 각군의 군사조직 및 지원시설(부대 및 기관)의 교육 실시 결과를 일괄취합 보고

▶ 병사를 제외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등의 교육실시 결과보고

5. 경찰·소방 *취합범위 참고1

- (보고대상) 경찰청,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른 기관
- (보고방식) 각 청은 통계연보에 따른 소속기관 및 지방조직(기관)의 교육 실시 결과 일괄취합 보고

6.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포함)

- (보고대상) 광역시·도, 시·군·구 내 기관
- (보고방식) 상위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기준) 하위 기관 교육 실시 결과 일괄취합 보고

- ▶ 읍·면·동 교육실시 결과는 시·군·구에서 일괄취합
- ▶ 자치구가 아닌 구는 상위 시에서 일괄 취합
- ▶ 교육행정기관(시·도 교육청, 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시에서 일괄 취합

부록

붙임1 자살예방교육 수행기관

자살예방방법론에 의거하여 아래 기관에서 보급하고 양성된 강사에 한하여 자살예방교육으로 인정되며, 그 외 기관의 강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자살예방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아래 수행기관 목록을 확인 후 교육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근거: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1.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양성된 전문강사

→ 전문강사 찾기 경로: ①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접속(edukfsp.or.kr)→ ② 자살예방교육 안내 → ③ 강사찾기

2. 등록교육 보유기관 → 세부내용은 각 개발기관 문의

	개발기관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1	강원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gwmh.or.kr:446/	033-251-1970
2	경기도자살예방센터	https://www.mentalhealth.or.kr/	031-212-0437
3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gnmhc.or.kr/	055-239-1400
4	광주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hmt.or.kr/	062-233-2468
5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gbcmhc.or.kr/	062-267-5510
6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www.gumimind.com	054-444-0199
7	부산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www.bsmhc.com	051-246-1981
8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beautymind.or.kr	051-638-2662
9	서울시자살예방센터	http://www.suicide.or.kr/	02-3458-1000
10	성남시자살예방센터	https://www.smhc.or.kr	031-780-7000
11	수원시자살예방센터	http://m.csp.or.kr	031-214-7942
12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wjmhc.or.kr	063-262-3066
13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https://ispc.or.kr	032-468-9917
14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061mind.or.kr/main.do	061-350-1700
15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jbmhc.or.kr/	063-251-0650
16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jejumind.or.kr/	064-717-3000
17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chmhc.or.kr/	041-633-9183
18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www.cbmind.or.kr	043-217-0597
19	화성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hsmindstep.or.kr	031-305-5151
20	대구학생자살예방센터	https://kpwee.kr/Center	053-326-9275
21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ttps://chingusai.net/xel/	02-745-7942
22	(주)CNS	http://www.crisisnego.co.kr/main	-

※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복지부 (예비·본)인증을 취득한 교육 또는 재단의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임

□ 성인(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 교육자료 (총 42종)

① 복지부 개발 교육자료 (9종)

프로그램명	시간 (분)	교육방법		
		대면	시청각	온라인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청년)	60	○	○	○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성인)	60	○	○	○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형	120	○		○
보고듣고말하기 2.0 노인편	60	○		○
보고듣고말하기 2.0 청년편	60	○		○
보고듣고말하기2.0 중장년편	60	○		○
이어줍인(성인용)	60	○		
이어줍인(직장인용)	60	○		
이어줍인(노인용)	60	○		

② 광역 및 기초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대면교육자료 (28종)

개발기관	프로그램명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생명사랑을 위한 ‘마음에 온(ON)’ 일반 2.0
	생명사랑을 위한 ‘마음에 온(ON)’ 노년층 2.0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나.비효과(나와 너로부터 비롯된 효과) 성인(청년) ver.
광주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안녕해U?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 지킴이 훈련 프로그램
	교사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자살예방 응급요원 교육 * 자살예방 지킴이 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자살 예방 전문가 양성교육
강원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 · 통장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프로그램 「세상살이」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경상남도 중 · 장년층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4050그대에게’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전라북도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교육 ‘소중한 숨’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소중한 숨'[기본형]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소중한 숨'[단축형]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사랑톡톡65+'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이어달리기(성인용)
	생명이어달리기(노인용)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배달'
광주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요즘어때?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지구대
부산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존중약국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	노인생명존중교육 생명충전기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	노인 우울 및 자살사고 경계선 집단프로그램 마음지팡이
성남시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생명지킴이양성교육 '이심전심' (노인용)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행복키움 Thank You 프로그램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주민참여 프로그램(중·장년층)
	자살예방 주민참여 프로그램(노년층)

③ 민간 등 기관 개발 교육자료 (5종)

개발기관	프로그램명
대구학생자살예방센터	청소년 생명존중 부모교육 : 우리 아이가 자해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통일부 하나원, 한국자살예방협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20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한국자살예방협회	교사용 보고듣고말하기(게이트키퍼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소수자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교육 무지개돌봄
(주)CNS	자살시도 중재협상 프로그램

□ 특수직군 대상 교육자료 (총 12종)

① 복지부 개발 교육자료 (2종)

프로그램명	시간 (분)	교육방법		
		대면	시청각	온라인
응급의료종사자대상 자살관련 교육	120분	○		
연예 관련 종사자 대상 자살예방 교육	60분~120분	○		

② 시·도 및 민간기관 개발 교육자료 (10종)

개발기관	프로그램명
한국자살예방협회, 육군본부	육군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1.9KA
한국자살예방협회, 해군본부	해군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1.9KN
한국자살예방협회, 해병대사령부	해병대를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1.9ROKMC
한국자살예방협회, 공군본부	공군을 위한 보고 듣고 말하기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소방공무원 동료 게이트키퍼 훈련 프로그램 뽐!뽐!뽐!(구미)
소방청, 한국자살예방협회	소방공무원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내근직편)
소방청, 한국자살예방협회	소방공무원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화재구조편)
소방청, 한국자살예방협회	소방공무원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구급편)
이지앤웰니스, 경찰청	경찰동료 생명지킴이 교육프로그램 (전직원용)
이지앤웰니스, 경찰청	경찰동료 생명지킴이 교육프로그램 (관리자용)

참고1 국가기관 등 결과보고 취합범위

□ 국가기관

○ 입법부

- 「국회법」에 따른 국회
- 동 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에 따른 입법지원조직

분류	기 관 명	
입법부	입법조직	국회
	입법지원조직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 사법부

- 「헌법재판소법」과 동 법 제19조의4에 따라 설립된 조직
-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법원, 각급 법원 및 지방법원 및 지원

분류	법원	지원
사법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대법원	윤리감사관
		양형위원회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대구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가정법원	
부산회생법원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광주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제주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수원회생법원	
	특허법원	

○ 행정부

-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분류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
- 19부 3처 18청(2청 제외) * 경찰청, 소방청 별도 보고 기준: 청 단위 취합 후 시스템 입력
-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분류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준하는 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국가정보원	
	특별감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광주인권사무소
		대구인권사무소
		대전인권사무소
		부산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청렴연수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고리원전지역사무소
		월성원전지역사무소
		한빛원전지역사무소

	선거관리위원회	한울원전지역사무소
		각급(하급)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청심사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교육부	교육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우정사업본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외교원
	외교부	대한민국재외공관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무처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회담본부
		북학인권기록센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국립법무병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연수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외국인보호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
		청소년꿈키움센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출입국·외국인청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가민방위재단안전교육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단안전연구원
		이북5도
		정부청사관리본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광주지방보훈청
	국가보훈부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피산호국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국립산청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대구지방보훈청
		대전지방보훈청
		보훈심사위원회
		부산지방보훈청
		서울지방보훈청
		보훈청
		강원동부보훈지청
		강원서부보훈지청
		경기남부보훈지청
		경기동부보훈지청
		경기북부보훈지청

		경남동부보훈지청
		경남서부보훈지청
		경북남부보훈지청
		경북북부보훈지청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북부보훈지청
		울산보훈지청
		인천보훈지청
		전남동부보훈지청
		전남서부보훈지청
		전북동부보훈지청
		전북서부보훈지청
		충남동부보훈지청
		충남서부보훈지청
		충북남부보훈지청
		충북북부보훈지청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정책방송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국가기술표준원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남부광산안전사무소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동부광산안전사무소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무역위원회
		서부광산안전사무소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울춘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전기위원회
		중부광산안전사무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춘천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
	환경부	국립미세먼지정보센터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금강유역환경청
		금강홍수통제소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홍수통제소
		대구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홍수통제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원주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화학물질안전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충북지방고용노동청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토지리정보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항공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항공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항공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본부
		항도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남해어업관리단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해어업관리단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해사고등학교
		서해어업관리단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해사고등학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대구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관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관세인재개발원
		관세평가분류원
		광주세관
		대구세관
		부산세관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중앙관세분석소
		평택세관
	조달청	강원지방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광주지방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
		조달품질원
		충북지방조달청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교육원
		호남지방통계청
		강원지방통계지청
	재외동포청	
	검찰청	
	병무청	강원지방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
		병무민원상담소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서울지방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제주지방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충북지방병무청
		강원영동병무지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인천병무지청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방위사업교육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능유적본부
		만인의총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현충사관리소
		국립농업과학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
		서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	서울사무소
		특허심판원
		국립마산병원
	질병관리청	국립목포병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검역소
		강원지방기상청
	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국립기상과학원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기상레이더센터
		대구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수도권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지청
		청주기상지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장
		군산해양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
		부산해양경찰서
		부안해양경찰서
		사천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서해5도특별경비단
		속초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완도해양경찰서
		울산해양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창원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포항해양경찰서
	항공우주청	

□ 국군, 소방, 경찰

- 군: 「국군조직법」 제14조에 따른 각군본부, 제15조에 따른 각군부대와 기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에 따른 부대 또는 기관

분류	중앙기관	하위조직
국군	육군본부	군사조직 (각군 부대 및 기관)
	해군본부	
	공군본부	

- 소방: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기준」 및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른 기관

분류	중앙기관	하위조직
소방	소방청	소속기관
		국립소방연구원
		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
		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
		구조대(일반+특수)
		구급대
		항공대
		소방정대
		소방체험관
		지방소방기관

- 경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기준」 및 경찰통계연보에 따른 기관

분류	중앙기관	하위조직
경찰	경찰청	소속기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구원
		경찰병원
		시도경찰청 및 직할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지방조직

참고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시행규칙 별도 규정 없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00000호, 7. 12. 공포)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	제10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

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교육기관
3.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인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및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4.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종사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자살예방 상담·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 방법 및 내용,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및 결과 제출 절차와 제5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

2. 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살문제와 현황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통합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자살예방 교육: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 다만, 자살예방 교육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교육 우수 기관·단체·단체·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기관·단체·단체·시설 내에 게

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자살예방 상담: 전화상담,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 또는 개별면담의 방법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하려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 결과를 제출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0조의3(자살예방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상담·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과 같은 조 제4항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 및 시설에 보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종전의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